

## Privacy Legal Update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일반규정으로 일원화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6장(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15)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오프라인 사업자에게는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사업자 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하였음.
- 개정안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일반규정과 유사한 특례규정을 대폭 일반규정에 통합함.
- 나아가, 기존에 특례규정에만 존재하였던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 손해배상 보장 제도,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확대 적용함. 반면, 기존 특례 규정상 온라인 사업자에게 부과되었던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삭제됨.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 등 일부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을 통하여 정해질 예정임.

###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삭제, 파기 등을 요구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자신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i)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처리되고, (ii)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송하여야 함.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매출액, 보유 개인정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임.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도입

- 개정안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정보주체에게 (i) 법적 효력이 미치거나 (ii)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용등급 자동 결정, 채용 결정 등), 정보주체가 해당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 이의제기, 설명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함.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의사결정을 배제하거나, 재처리하거나,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 형사벌 중심의 제재에서 경제제재로의 전환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면서, 경제적 제재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만 부과함.
- 개정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제한 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함.
- 한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이나, 개정안은 이를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대폭 상향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장치”로 규정하여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만을 규율하고 있음.
- 개정안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촬영이 허용되도록 규정 함.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도, (i) 법률, 조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ii)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위하여 그러한 사정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는 경우, (iii)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인정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나아가,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거나 국외이전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외이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 동의 면제 사유 확대: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면제 사유로만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예외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면제 사유로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 면제 사유를 확대함.
- 가명정보 파기 의무 명확화: 현행법은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관한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에서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함으로써, 가명정보에 대하여도 파기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위탁자의 동의 없는 재위탁 금지: 현행법과 달리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권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고, 법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분쟁조정에 대한 의무적 참여: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우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의무적으로 조정에 응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함.